

의안번호	2213526
의 퇴 인	윤영석 의원
회 답 일	2025. 10. 14.
추 계 번호	25F548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해외자원개발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공제대상 확대, 공제율 상향,
적용기한 7년 연장 등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104조의15 제1항 (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)	○ 적용기한 7년 연장 - (현행) 2026.12.31. → (개정안) 2033.12.31. ○ 공제율 상향 및 광물개발기업 3% 추가 공제율 적용 - (현행) 3% → (개정안) 중소기업 10%, 중견기업 8%, 대기업 5% ○ 공동 출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 ○ 적용 투자 범위 확대 - (현행) 광업권과 조망권을 취득하는 투자 → (개정안) 광업권과 조망권을 취득하는 투자 및 취득 후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
2	안 제104조의15 제2항 (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)	- 사업 종료로 인한 세액공제 반환 및 가산세 납부 조치에 대한 예외 단서 신설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4조의15 제1항 (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)	○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호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04조의15 제2항 (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)	○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호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공제대상 확대, 공제율 상향, 적용기한 7년 연장 등을 포함하므로 법인세 감소가 예상됨

[표 1]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실적: 법인세

(단위: 억원)

	2023	2024	2025(전망)
과세특례 실적 (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)	신설	0	0.05
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년도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유형별 투자세액공제율

사업유형	기업규모	현행	개정안
단독출자사업	대기업	3%	5~8%
	중견기업	3%	8~11%
	중견기업	3%	10~13%
공동출자사업	대기업	—	5~8%
	중견기업	—	8~11%
	중소기업	—	10~13%

주: 개정안은 광물개발기업에게 3% 추가 공제율 적용

- 내국법인의 해외자원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, 공제율 상향, 적용기한 7년 연장, 사후조치에 대한 예외 단서의 신설 등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, 기업규모 및 출자유형별 해외자원투자 규모와 출자기업의 과세정보가 필요하나, 현재 관련 정보가 부재함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자원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, 공제율 상향, 적용기한 7년 연장 및 사후조치에 대한 예외 단서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에 대한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 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이유섭	백경엽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유섭	02-6788-4838	useuplee@assembly.go.kr